

**차량의 용도, 규모, 배정대상, 차량 관리·운영 기준** (제2조제2항 관련)

용도	규모	배 정 대 상	차량 관리·운영기준
승용 (전용)	대형 및 중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대법관 또는 법원 행정처장</li> <li>○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</li> <li>○각급 법원장(서울 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, 서울 회생법원장 외 회생법원장 제외)</li> <li>○법원행정처 차장</li> <li>○법원도서관장</li> <li>○윤리감사관</li> <li>○대법원장 비서실장</li> <li>○법원 행정 처장이 지정하는 직위 보임자</li> <li>○차관급인 법원공무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최단운영연한 :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</li> <li>○최단주행거리 : 12만km 이상</li> </ul>
승용 (업무용)	대형·중형·소형 및 경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각급기관의 재판 업무 및 일반업무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최단운영연한 :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</li> <li>○최단주행거리 : 12만km 이상</li> </ul>
승합용 화물용 특수용	대형·중형·소형 및 경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각급기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최단운영연한 :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제</li> </ul>

			<p>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</p> <p>○최단주행거리 : 12만km 이상(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)</p>
<p>※ 비고</p> <p>대형·중형·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.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.</p>			